

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[] 부과명세서 [] 부과결정서(신규, 변경, 재부과, 용도변경)

「농지법 시행령」 제46조제2항,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,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[] 부과명세 []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.

납부의무자 (농지전용자)	성명(명칭)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			
	우편물수령지	(전화번호 :)			
사 업 명(전용목적)					
전용하는 농지의 표시		번지 외 필지			
농지전용 면적(㎡)	구 분	계	답	전	농지개량시설부지
	농업진흥구역				
	농업보호구역				
	농업진흥지역밖				
	합 계				
[] 부과 예정 [] 부과 결정	금 액(원)				
	감 면 비 율	(근거 : 영 별표2 제 호 목)			
	산 출 내 역				
허가·협의·그 밖에 처 분 신 청 일 자				부과기준일	
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여부		[] 여, [] 부	부과 결정 번호		

※ 첨부서류(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,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한 국농어촌공사로 부과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)

-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
-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
-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
-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·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
-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
-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
- 납부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(제45조제3항에 따라 납부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 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